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진로지원센터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진로지원센터), 02-970-9331

제정 2021. 2. 24. 학칙개정 2021. 10. 1. 개정 2022. 6. 30.

(삭 제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제17조에 의거 설치된 진로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1. 10. 1., 2022. 6. 30.)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신설 2022. 6. 30.)
 - 1. "진로교육"이란 학생에게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·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특강, 진로심리검사, 진로상담, 진로정보,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.
 - 2. "진로상담"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(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 - 3. "진로체험"이란 진로캠프·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.
 - 4. "진로정보" 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, 직업에 대한 정보,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.
- 제3조(업무) 진로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는 학생의 효율적인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22. 6. 30.)
 - 1.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사업 기획(개정 2022. 6. 30.)
 - 2.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활동 운영(개정 2022. 6. 30.)
 - 3.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(개정 2022. 6. 30.)

- 4. 진로 데이터 구축 및 진로정보 제공(개정 2022. 6. 30.)
- 5. 진로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활용(개정 2022. 6. 30.)
- 6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2. 6. 30.)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제5조(조직) ① 센터에 전임상담원, 객원상담원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 - ② 전임상담원은 진로상담 관련 공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상담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.
- 제6조(협력) 센터는 효율적인 학생의 진로상담을 위해 학과 진로상담 전담교수· 전담조교와 협력한다.
- 제7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혁신부처장, 학생부처장, 국제교류부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2. 6. 30.)
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.
 -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제8조(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 다.
 - 1. 센터의 운영, 정책 및 사업 계획
 - 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
 - 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

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9조(기타)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585호, 2021. 2. 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)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691호, 2022. 6. 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